

2024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 기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제4항 관련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기준

(단위 : 원)

가구원 수	지역		직장		재산과표액
	보험료 순위		보험료 순위		
	25%	50%	25%	50%	
1명	19,780	-	71,270	91,060	122,000,000
2명	24,360	96,060	75,960	109,700	207,000,000
3명	33,550	107,410	87,440	134,480	268,000,000
4명	46,380	120,170	99,900	161,250	329,000,000
5명	50,200	129,560	122,810	191,430	389,000,000
6명이상	65,680	161,700	167,460	219,660	450,000,000

- 1) 보험료는 부과보험료가 아닌 산정보험료이며,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음
- 2) 직장세대는 산정보험료 및 재산과표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감경 적용
- 3) 직장세대 산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 (가입자부담 보험료만 해당)와 소득월액보험료를 합산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 4) 재산과표액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금액으로, 세대원 전체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5) 임의계속가입세대의 보험료는 「보험료경감고시」 제9조에 따른 경감(100분의 50) 후 금액으로 함
- 6) 위 감경적용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의2에 해당되는 대상은 감경적용이 제외됨